

중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유 병 옥 *

-
- I. 서 론
 - II.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
 - III.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분쟁 및 중재제도
 - IV.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안
 - V. 결 론
-

주제어 : 중앙아시아, 국제상사중재, 투자분쟁, 국제투자분쟁협정, 독립국가연합

I. 서 론

소련연방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신생 독립국으로 등장하였다. 중앙아시아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신생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특히 국토면적과 함께 경제규모가 큰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며,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이다. 주요 자원부국으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국 및 선진공업국과의 투자 및 경제협력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E-Mail : onlinesolve@naver.com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향후 예상성장률이 세계평균보다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으며, 원유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과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¹⁾

중앙아시아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및 경제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은 주요 역내외 국가들의 치열한 투자진출 및 주도권 다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지하자원은 중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에 대한 에너지자원의 공급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주변국들 간의 경제개발에 대한 정책적 추진력과 자원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시장으로서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 및 자본의 투자, 기술 수출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과 투자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협력과 교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투자분쟁해결에 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무역관련 선행연구는 경제협력과 투자정책, 지역경제협력 및 투자리스크 등이 주요 논제로서 연구²⁾되었으며, 무역 및 투자분쟁과 중재제도에 관하여 중앙아시아를 포괄하는 연구논제보다는 주로 주변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 및 동북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논제와 국제투자분쟁관련 중재제도의 적용과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³⁾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국제무역과 투자에 따른 분쟁의 해결로써 각국의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소송이 아닌 국제상사 및 투자분쟁해결방법으로써 중재제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시장 환경과 무역규모를 살펴보고 국제적인 표준에 미흡한 경제시스템과 무역과 투자분쟁해결방법으로써 중재제도에 대한 한계를 고찰하며, 이에 대한 국제상거래

- 1) 카자흐스탄은 원유매장량이 세계 12위,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2위이며, 우라늄, 크롬, 아연, 은, 중석 등이 세계 10위 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몰리브덴, 티타늄 등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원유, 금(세계 5위) 등의 에너지와 광물자원 보유 국가이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상대적으로 보유자원이 비약한 편이다. KOTRA 국가정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2014 세계국가편람 참조.
- 2) 박해선·김승년, '터키와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관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5.; 조택래, '한국의 대중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성격과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11.; 김익준, '국제화물운송결로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CIS 지역관세동맹으로 인한 물류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박노형, '우즈베키스탄 기업투자법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12.
- 3) 김성룡, '러시아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분쟁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8.; 오원석·황지현,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연구', 중재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5.3.; 오원석·이경화,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최석범, '동북아국가들의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비교법적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8.

와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방안과 진출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

1. 중앙아시아의 지역과 시장환경

중앙아시아는 동서로는 카스피해와 만주를 잇고 있으며, 남북으로는 히말라야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경계로 두고 있다. 과거 중앙아시아지역은 소비에트연방체제에 있으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되었으나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는 역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 금, 우라늄 등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으로 인하여,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관심이 높으며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중앙아시아 국별 주요 무역 및 경제지표(2013년 기준)

구 분	인구 (만명)	면적 (천km ²)	명목GDP (백만USD)	1인당GDP (USD)	수출 (백만USD)	수입 (백만USD)	무역의존도 (%)	투자유치액 (백만USD)
카자흐스탄	1,742	2,724.9	231,876	13,610	88,678	61,902	64.9	9,739
아제르바이잔	931	86.6	73,560	7,812	35,912	19,766	75.6	2,619
우즈베키스탄	3,024	447.4	26,796	1,878		17,955	31.6	1,077
투르크메니스탄	570	488.1	41,851	7,987		15,611 (‘12)	44.3 (‘12)	3,061
키르기스스탄	564	199.9	7,226	1,264	3,091	6,931	138.6	758
타지키스탄	813	142.5	8,508	1,037	1,644 (‘12)	5,814	68.3	108
아르메니아	329	29.7	10,432	3,505	2,734	4,938	73.5	370
조지아	448	69.7	16,140	3,605	7,175	9,303	102.0	949

자료: KOTRA 국가정보 재구성, 빈공간은 비공개 및 미발표.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과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남북을 잇는 내륙통로 요충지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터키, 인도 등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정학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세계 물류환경에서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횡단철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⁴⁾와 중국횡단철도(TCR)⁵⁾와의 연결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자원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러시아에 의존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 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 그리고 러시아를 위회하는 에너지 수송관 확보 등을 위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구나 소득규모에서 매력적인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90년대의 고통스러운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존자원을 수출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경제성장이 주춤하였으나 건설한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왜냐하면 천연자원과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장점 그리고 높은 인구증가율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열악한 기업환경과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와 권위주의적인 권력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에서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활동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안정도가 높기에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가 되고 있다. 부존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특히나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물류나 정보통신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을 내포하고 있다.⁶⁾

4)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를 잇는 최장 철도노선으로 유럽철도와 연계하여 폴란드, 독일을 잇는 노선이다.

5) 중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서 중국동부에서 출발하여 중국서부지역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하는 노선이다.

6)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 2013. 12, pp. 14~15.

2.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

우리나라의 대중양아시아 수출규모는 전체 수출총액에서 1%에도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미흡한 무역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는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으로서 수송기계와 산업용 기계, 산업용 전자제품 및 가정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그리고 기초산업기계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수출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4년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과 승용차로서 수송기계와 그 부품으로써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수출규모인 20억 달러의 약 46%인 9억 4천만 달러에 이른다. 그 외에 원동기, 합성수지, 펌프 그리고 건설 중장비와 기계류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표 2>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수출

(단위: 백만 불, %)

구분	1992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우리나라 '14 총수출 대비 비율
카자흐스탄	2.2	52.8	82.3	272.5	604.3	885.3	906.9	0.158
아제르바이잔	0	4.3	2.9	32.2	184.0	282.0	269.5	0.047
우즈베키스탄	3.3	244.2	230.4	493.0	1,438.6	1,766.5	2,032.4	0.355
투르크메니스탄	0.0	0.4	15.2	6.4	109.5	193.5	192.9	0.034
키르기스스탄	0.0	2.1	17.0	66.5	104.5	161.9	155.8	0.027
타지키스탄	0.0	12.8	2.7	12.7	31.7	38.1	48.4	0.008
아르메니아	0.0	1.8	0.9	3.1	15.6	25.2	14.5	0.003
조지아	0.0	1.2	3.0	8.8	48.6	113.5	143.8	0.025
중앙아시아 8개국 총계	5.5	319.6	354.4	895.2	2,536.8	3466.0	3764.2	0.657

자료: 한국무역통계, MTI 2단위 기준. 우리나라 2014년도 총 수출액은 572,664.6백만 불임.

우리나라가 대중양아시아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2014년도 우리나라 총수입규모의 0.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로 수입되는 수입품목으로는 에너지원인 광물성 연료 그리고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펄프와 섬유류 그리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이 수입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수입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의 경우⁷⁾ 우리나라는 원유, 합금철, 우라늄, 비타 비철금속 제품, 동물성 한약재, 동피와 그 스크랩, 알루미늄피와 그 스크랩 등이 주요 수입품목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무역규모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미흡한 편이지만 그 규모의 증가추세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991년 독립된 이후 우리나라와 무역의 개시하기 시작하면서 1995년 대비 현재의 수출규모는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입은 약 4배 증가하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수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1992	1995	2000	2005	2010	2012	2014	우리나라 '14 총수출 대비 비율
카자흐스탄	8.5	73.4	49.3	241.6	333.9	308.2	560.7	0.106
아제르바이잔	0.0	2.8	2.0	0.0	0.0	0.1	0.1	0.000
우즈베키스탄	0.3	134.7	103.9	28.8	21.9	42.3	27.3	0.005
투르크메니스탄	0.0	2.9	0.1	1.3	0.4	0.8	0.2	0.000
키르기스스탄	0.9	0.9	0.2	1.6	2.7	0.2	8.4	0.001
타지키스탄	0.0	1.5	9.6	2.2	102.0	4.6	2.8	0.000
아르메니아	0.0	0.4	0.1	0.1	2.8	1.6	3.2	0.000
조지아	0.0	0.8	2.5	10.9	29.8	36.8	19.9	0.003
중앙아시아 8개국 총계	9.7	217.4	167.6	286.5	493.5	394.5	622.5	0.118

자료: 한국무역통계, MTI 2단위 기준. 우리나라 2014년도 총 수출액은 572,664.6백만 불임.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서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투자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9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약 26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1980년 대비하여 35년 만에 200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7) KOTRA의 카자흐스탄 국가정보 참조.

<표 4> 우리나라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USD)

구분	해외투자 신고금액	해외투자금액	신규법인의 수
1980	273.5	145.1	352
1990	2,380.1	1,068.7	345
1995	5,331.2	3,228.0	1,347
2000	6,236.6	5,286.6	2,118
2005	9,805.6	7,282.6	4,450
2010	34,441.9	24,642.6	2,890
2012	39,642.2	28,426.5	2,538
2013	35,593.0	29,843.7	2,813
2014	35,014.1	26,769.0	2,79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 해외투자현황 참조.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투자는 주로 중국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 그리고 플랜트시장으로서 중동국가들이 주요한 해외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양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총 해외투자규모 대비하여 약 0.6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양아시아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양아시아의 성장잠재력은 특히 에너지 자원과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자국의 투자에서 엿볼 수 있다. 중양아시아의 2009년 이후 평균경제성장률은 6%를 넘는다. 이는 세계의 평균성장률인 3.0%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며 향후 예상되는 성장률은 6.5%로 앞으로 상당기간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⁸⁾

이와 함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자원개발과 외국인 투자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양아시아의 고성장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 IT 플랜트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개발형 건설분야의 수요가 높다.

8) 한국수출입은행, 중양아시아 투자환경 및 시사점, 2014. 6.

〈표 5〉 우리나라의 대 중앙아시아 연도별 해외투자 현황

(단위: 백만USD)

구분	2000	2005	2010	2012	2013	2014
카자흐스탄	1.8	25.5	131.1	192.9	174.0	158.8
아제르바이잔	0.05('97)	0.07('07)	2.37('08)	0.03	0.0	0.19
우즈베키스탄	17.7	8.6	40.6	18.8	13.0	11.5
투르크메니스탄	-	0.01('07)	-	-	-	-
키르기스스탄	0.1	0.3	12.2	1.9	3.6	2.5
타지키스탄	29.0('01)	0.1('07)	0.01	0.03	0.04	-
아르메니아	-	0.04('04)	-	-	-	-
조지아	-	0.03	8.06('08)	0.02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참조.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투자는 초기에는 제조업에 집중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자원개발, 건설 분야 및 금융서비스와 플랜트 등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 사례로는⁹⁾ 1990년대 대우의 우즈베키스탄에 자동차, 전자, 면방분야 투자를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부동산, 자원개발 투자를 비롯하여 투자규모가 증대되고 있다.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의 6위업체인 센터크레디트은행(BCC)의 인수는 초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지분가치 폭락에 따른 해외투자의 실패사례로 손꼽혔지만 수년간의 개선을 통하여 현재 영업력 회복과 도약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조직의 체질개선과 금융노하우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에 슴베사를, 2011년에 알티우스사를 인수했다. 2013년 롯데제과는 라하트라는 카자흐스탄 1위의 제과업체에 1.57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수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아틸라우 석유화학단지, 발하쉬 화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롯데케미칼이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에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9)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 2013. 12, p. 19.

10) 서울경제신문, “트라우마로 남은 국민은행 카자흐 BCC투자”, 2015년 4월 5일자.

Ⅲ.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분쟁 및 중재제도

1. 중앙아시아의 국제상사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1) 중앙아시아의 중재제도

중재는 통상 국제상사거래의 분쟁해결로서 선호되는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요구에 따른 분쟁해결을 구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부여하기 때문에 소송과는 구별된다. 중재의 주요 이점으로는 집행력, 당사자자치, 중립성, 비밀유지 및 정보 보호, 비용효율 및 신속한 분쟁해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의 이점은 분쟁해결의 당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국가 내의 법제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내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국내법제가 분쟁해결에서 중재의 효력이나 중재판정의 취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중재제도의 표준과 관행에 부합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중재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중재관련 법제의 정비도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¹¹⁾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 이후 순차적으로 국제적인 중재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하면서 본 협약의 적용관련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¹²⁾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국제적인 표준의 인정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기는 이르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중재에 관하여 그 적용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11) EBR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essment,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the CIS and Mongolia”, Roman Chapaev Consultant to the Project, 2007. 4, p. 64.

12) 2015년 11월 기준으로 UN무역법위원회 자료 참조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뉴욕협약 체결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비준 혹은 조인	발효일	비고
카자흐스탄	1995년 11월 20일	1996년 02월 18일	
아제르바이잔	2000년 02월 29일	2000년 05월 29일	
우즈베키스탄	1996년 02월 07일	1996년 05월 07일	
투르크메니스탄	-	-	
키르기스스탄	1996년 12월 18일	1997년 03월 18일	
타지키스탄	2012년 08월 14일	2012년 11월 12일	체약국간 적용, 소급적용유보 및 부동산 관련 사건의 적용 유보선언
아르메니아	1997년 12월 29일	1998년 03월 29일	체약국간 적용, 상사유보선언
조지아	1994년 06월 02일	1994년 08월 31일	

중앙아시아의 중재관련 규범의 모델이 되는 것은 UNCITRAL 중재모델법 1985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재제도는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는 중재합의나 중재에 관한 법원의 지원과 개입 그리고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 집행 등에 대하여 규정 및 실제적 적용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³⁾

우선 중재합의의 형식과 중재합의의 요건을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재법제는 UNCITRAL 중재모델법 제7조 1항의 중재합의의 방식을 따른다. 이때 중재합의는 단순한 서면형식을 따르지만, 기타의 방식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원의 태도나 국내법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방식이다.¹⁴⁾

이와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중재합의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하여 신중하다. 국제적인 중재경향과 규범으로서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국가들임에도 중재합의 관련 법원의 태도는 엄격한 면이 있다. 즉, 중재합의 관련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어야만 중재합의의 효력과 중재관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국가 법원은 국제중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관행상 이루어지는 사소한 경우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omak S.A 사건¹⁵⁾에서 신청인인 Romak S.A는 스위스의 국제적인 곡물거래 회사로서 곡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GAFTA¹⁶⁾의 표준계약서에 의해 체결하였다. Romak와 우즈베키스탄의 Uzkhlebor product, Uzdon, Odil이 해당 계약에 관여되어 있었다. 본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Uzdon이 공급자인 Romak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GAFTA의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GAFTA 중재판정부는 본안 사건의 준거법에 관한 특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국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1997년 8월 22일 Uzdon에게 대금의 지급과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금 및 이자의 지급을 명령하는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¹⁷⁾

13) OECD, "Experts Group Meeting on Dispute resolu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UNCITRAL Secretariat, Vienna International Centre Vienna, Austria. 2003. 6.

14) 서면중심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CISG의 계약합의의 형식에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서면합의 양식의 규범을 고려하여 본 협약의 제12조에서는 국내법 준용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서면형식요건은 이전의 소비에트연방의 요구에 의하여 통일매매법의 규정에 포함되었다.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 138.;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69~171.; 조지아는 2009년에 중재법을 개정하면서 IT유형의 중재합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15) *Romak S.A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CITRAL, PCA Case No. AA280, 2009.

16) 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런던곡물거래협회).

그러나 승소한 Romak가 2000년 8월 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상사 법원에 FAFTA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였으나 2000년 10월 2일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FAFTA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신청서가 우즈베키스탄 공식언어의 계약서와 원본 중재판정의 해석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뉴욕협약 제5조 1항 b호에 의하여 Uzdon이 중재인 선정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둘째, 중재절차에 관하여 중아시아의 국가 법원의 중재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에 대한 태도도 불안정하다. 일반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법원의 개입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제중재에서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중재인의 기피나 중재판정부의 관할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중재절차 중에 법원에 의한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증거의 수집이나 중재합의의 승인, 법원의 보전처분 등으로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아시아 국가들은 중재에서 법원의 개입이나 지원 등 그 역할에 관한 적절한 기준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아시아 국가 법원이 중재관리자¹⁸⁾로 개입함으로써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무력화될 잠재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셋째, 중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이론적으로 UNCITRAL 중재모델법에 따라 임시적 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이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명시적 규정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다루지 않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¹⁹⁾

17) 중재판정 이후 Uzdon은 GAFTA 중재판정에 대하여 1998년 3월 27일에 FATFA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998년 6월 31일 그 항변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던 Uzdon은 1998년 8월 28일 영국런던의 고등법원에 FAFTA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의 중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고등법원은 1999년 1월 28일 본 항변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본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으며, 중재판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위하였고 적절한 절차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Uzdon의 청구 사유로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인 자신이 자초한 문제이며 항변을 구하고자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상대방에게 구제방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결정하면서 소를 기각하였다.

18) 조지아의 구중재법에서는 법원의 개입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하면서 법원이 중재의 감독자내지 관리자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개정된 중재법에서는 법원의 개입에 관한 제한규정을 포함시켰다.

19) 중아시아 국가 가운데 중재법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있다. 반면에 타지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중재법을 인정될 만한 법제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중재를 위한 법제가 없는 실정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2015년 11월 현재 뉴욕협약 1958의 체약국도 아니다.

넷째, 중재판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중재에서는 공정과 선의 원칙에 따라 혹은 우호적 중재로서 실체법과 함께 국제적 무역관행과 관습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국가의 법계에서는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공정과 선의 원칙이나 우호적 중재는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은 중재에서 주요한 이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호적 중재에 대하여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거래 당사자들은 중재합의에 우호적 중재가능성을 포함하고자 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에게도 특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 외국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뉴욕협약의 제5조에 열거된 취소사유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할 수 있다.²⁰⁾ 실무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법원은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험에 따라 중재판정의 그 본안 문제를 면밀히 검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뉴욕협약 제5조의 열거된 사유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중재판정 집행을 반영하는 국제적인 일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법원에 의해 고려되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근거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경향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법원이 중재제도를 긍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중재판정의 본안 내용을 엄격함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중재법제

중앙아시아의 주요국으로서 아제르바이젠, 조지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의 중재관련 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제르바이젠의 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1999년 11월 18일 제정된 국제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 1985를 전폭적으로 인용하고 있다.²¹⁾ 다만 중재의 적용범위와 법원의 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와 관련하여 모델법과 일부 구별되고 있을 뿐이다.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에서 중재합의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만 일부 혹은 전부를 중재에 부탁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²²⁾ 이에 따라 당사자간에

20) 뉴욕협약 제5조 2항 b호.

21) EBR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essment -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the CIS and Mongolia", Roman Chapaev Consultant to the Project, 2007. 4, p. 26.

22)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 1999 제7조 1항. "Arbitration agreement - a agreement between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부탁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는 배제된다. 중재합의의 형식에 관하여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합의가 당사자들의 서명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거나 서신, 전자통신, 텔렉스, 전신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타방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중재합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그러므로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에서는 타방당사자의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열거된 유형의 중재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국제중재법인 국가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승인 거절이나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젠의 국제중재법에서 중재판정이 아제르바이젠의 법에 반하는 경우에 중재판정의 취소나 승인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는 중재의 당사자들은 아제르바이젠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구하기 위하여 분쟁에 대한 준거법의 선택에 있어서 아제르바이젠의 국내법을 일반적으로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지아의 중재법제와 관련하여 개정 이전의 중재법 1999에서 중재합의는 그 형식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중재합의에 서면성을 규정한 것 이외의 유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²⁵⁾ 이에 개정 중재법 2009에서는 정보통신방법을 포함한 유형의 중재합의를 인정하는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인용함으로써 국제적인 중재합의의 규정을 수용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중재법 1999에서 법원의 개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과도한 개입과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일방당사자 혹은 중재에서 요구되는 경우 법원이 과도하게 심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⁶⁾ 하지만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으로의 개정 노력으로 개정 중재법 2009에서는 중재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개입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다.²⁷⁾ 이에 따라 개정된 중재법 2009는 국제적 표준을 반영하는 현대적인 법제를 규정함으로써 국제상사중재의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중재법제와 관련하여 국제중재법은 비계약적 상사분쟁의 해결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될 수 없고 오직 상사계약에서 야기되는 분쟁에만 제한하

parties on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f a part or the whole of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respect of any concrete legal relationship, whether such agreement is of legal or other nature.”

23)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 1999 제7조 2항.

24)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 1999 제34조 2항 b호.

25) 조지아 중재법 1999 제1조.

26) 조지아 중재법 1999, 제6조.

27) 조지아 개정 중재법 2009, 제6조 2항.

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의 모델법으로서 UNCITAD 모델중재법에서는 계약적이든 비계약적이든 구분없이 상사분쟁에 대하여 중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구별된다.²⁸⁾ 또한 카자흐스탄 국제중재법 제2조 1항은 특히 카자흐스탄의 공공정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정책은 카자흐스탄 국가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구조와 국가의 근본정책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33조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로서 카자흐스탄의 공공정책에 반하거나 또는 카자흐스탄 중재절차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²⁹⁾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중재법 하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하여 중재법의 중재절차 준수도 고려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 국제중재법에서 법원의 개입과 관련하여 중재인의 기피에 대하여 법원은 개입하지 않으며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⁰⁾ 이는 국제적인 표준 중재제도에서의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중재인의 기피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³¹⁾되어 있음을 비교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독립한 중재와 관련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002년 7월 30일 중재법을 채택하였으며, 수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대적 중재법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중재법은 국제적인 표준과는 구별되고 있으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타지키스탄은 중재법으로 인정될 만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중재를 다룰 수 있는 타지키스탄 법제는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뉴욕협약 1958의 체약국이 아니었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체약국이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역시 중재를 위한 법제가 없다.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뉴욕협약 1958의 체약국도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중재법원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즈베키스탄에서 중재인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 중재인은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시민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는 중재절차규칙의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법원에 제기

28) James H Cart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Second Edition, Law Business Research Ltd, 2011. p. 287.

29) 카자흐스탄 국제중재법 2013, 제33조 2항.

30) 카자흐스탄 국제중재법 2013, 제10조.

31) UNCITRAL 모델 중재법 제13조 3항.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재재판부에 관한 법 2006’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만 적용되며, 중재합의의 인정과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의 중재관련 규정은 외국중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은 국제합의에 의하여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1958을 비준하였다. 이에 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내용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하다. 외국의 계약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약정에 제3국에서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을 삽입하고자 한다. 외국중재판정이 적용되는 협약에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그 집행을 제공하고 있다.³²⁾

전반적으로 독립국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적 상거래의 경험과 중재제도에 대한 법규범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국제중재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미흡한 법규범을 고려하여 주의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2. 중앙아시아의 국제투자분쟁해결

1) 국제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이란 국제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분쟁으로서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국제투자분쟁은 국제상사분쟁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투자유치국의 일정한 행위나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에서 정한 보호규범에 위반됨에 따라 제기되는 경우의 협의적인 개념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협정은 주로 1991년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하여 ‘무역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무역과 투자를 위한 경제협정의 체결은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자흐스탄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2년에 수교이후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투자보장협정이 1996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1997년에 체결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1월 29일 수교한 이후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키르기스스탄과 1992년 수교 이후 2008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32) Baker & McKenzie,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 - Uzbekistan”, 2010. p. 9.

2) 투자분쟁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시장의 규모, 안정성이 가장 큰 국가들로서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방정책을 유지하며, 투자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광업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업과 임업 등에서도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보다는 비교적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개선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적 환경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과 광업 등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투자는 1990년 중반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2000년 이후의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및 부존자원경제와 우리나라의 자본과 기술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대한 진출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투자유치국의 정치적인 리스크와 불안정성 및 정부의 규제와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의 부패와 투자 산업의 불확실성이 주요한 위험으로 평가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제전환국으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인하여 투자 및 사업 수행에서 정부 고위직과의 인적 연결여부가 투자를 좌우하는 경향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는 투자환경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³³⁾

3) 투자분쟁해결

UNCTAD에 의하면 국제투자분쟁과 국제투자중재사건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월 기준 공개된 사건 수는 520건에 이른다. 1990년대 후반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국제투자분쟁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세계적으로 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투자분쟁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⁴⁾

33) 박지원,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중앙아시아 연구소, 외국어대학교, 2013. 8, pp. ~6.

34) UNCTAD 분쟁사건 통계 및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sues Note, 2014.

2013년 UNCTAD 자료에 의하면 누적 기준으로 총 98개 국가가 국제투자분쟁을 경험하였다.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가 5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자확대에 따라 특히 카자흐스탄이 투자분쟁의 피신청인으로서 누적 14건을 기록하며 세계 14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투자분쟁의 피신청인으로서 키르기스스탄이 투자분쟁 사건 8건, 우즈베키스탄이 8건, 아제르바이잔이 2건 타지키스탄이 1건 등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협약인 ICSID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이다.³⁵⁾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에서 주요국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2000년 9월에 비준함으로써 ICSID협약은 중앙아시아에 투자분쟁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가운데 타지키스탄은 현재 ICSID협약에 서명이나 비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주의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타지키스탄으로서 투자분쟁을 전형적으로 스톡홀름상공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 SCC)의 중재기관을 이용하고 있다.³⁶⁾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투자분쟁해결방법으로서 ICSID협약과 양자간 투자협약(BIT)에 따른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의 특성에 따른 기밀성을 포함하는 중재에 의한 투자분쟁해결제도가 투자유치국의 경우 매우 불리하다는 정서가 널리 깔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기준 UNCTAD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³⁷⁾ 투자유치국에 우호적으로 판정된 경우가 43%로서 투자자에게 우호적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31%보

35) 2015년 10월 현재 서명과 체약국은 모두 159개국에 이르고 있다. <https://icsid.worldbank.org> 참조.
<중앙아시아 국가의 ICSID협약 체약 현황>

구분	서명	비준	발효일
카자흐스탄	1992년 7월 23일	2000년 9월 21일	2000년 10월 21일
아제르바이잔	1992년 9월 18일	1992년 9월 18일	1992년 10월 18일
우즈베키스탄	1994년 3월 17일	1995년 7월 26일	1995년 8월 25일
투르크메니스탄	1992년 9월 26일	1992년 9월 26일	1992년 10월 26일
키르기스스탄	1995년 7월 9일	-	-
타지키스탄	-	-	-
아르메니아	1992년 9월 16일	1992년 9월 16일	1992년 10월 16일
조지아	1992년 8월 7일	1992년 8월 7일	1992년 9월 6일

36) 2013년 기준으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사건에 관하여 중재기관과 중재규칙 적용을 살펴보면 전체 사건의 약 55%는 ICSID가 중재기관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UNCITRAL 이 35%, 스톡홀름 상공회의소가 5%, 기타 5%를 차지하고 있다(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sues Note, 2014. p. 4).

37)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IA Issues Note, 2014. 4. pp. 9~10.

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에 투자유치국에게 특히 불리한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³⁸⁾

국제적인 통계에 따라 이미 2013년을 기준으로 누적 투자분쟁의 피신청국 순위 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쟁 사건의 수는 인도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10위에 이른다. 그리고 2013년 당해연도를 살펴보다라도 국제적인 투자분쟁과 관련한 피 신청국으로는 칠레가 7건으로 가장 많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4건과 2건으로 이집트와 스페인의 6건보다는 낮은 분쟁건수이 기 하다.³⁹⁾

그러나 현재와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확대 및 잠재시장성에 비추 어 볼 때 향후 중앙아시아 관련 국가들 투자자들 사이의 투자분쟁사건은 비례하여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의 문제점과 대안

1. 중앙아시아 무역과 투자분쟁해결의 문제점

첫째, 중앙아시아국가들의 불충분한 중재법제의 문제이다. 중앙아시아는 1990년 대 초반에 구소련으로부터 독립된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장에 관하여 국제적 추세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법 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중재제도에 대한 경험이 충 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의 중재법제를 수용하는 국내의 중재법제 정 비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중재법으로 지칭되는 법제를 구비하고 있는 아제 르바이잔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국제적인 표준의 중재제도 와 달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젠의 중재법 하에서는 중재합의 방식

38) UNCTAD리포트(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sues Note, 2014)를 살펴보면 투자분쟁의 해결과정 중에 투자자와 국가의 상호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26%를 차지하고 조사결과는 투자자가 주로 분쟁의 신청인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국에게 유리한 합의에 의한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 히 투자자-국가간 ISD분쟁해결은 난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와 국가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국제적 으로 합의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ISD에 대한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9)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sues Note, 2014. 4, p. 8.

과 관련하여 타방당사자의 형식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중재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⁴⁰⁾ 또는 법원의 과도한 개입을 규정하고 있던 조지아의 개정 이전 중재법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중재절차 중에 중재인기피에 관한 결정 등에서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하여 원활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카자흐스탄의 국제중재법제도 국제표준 중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중재를 위한 법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한적이고 그 역사적 경험도 미흡한 실정이다.⁴¹⁾

둘째, 중양아시아 국가들이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상 실무적 집행에서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의 문제이다. 중양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의 실무적 적용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Petrobart Limited v. Kyrgyz Republic* 사건은⁴²⁾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사법기관의 부당한 행위가 그 대상이 되었다. 신청인은 키르기스스탄의 공기업인 KGM에 대하여 대금문제해결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고 KGM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3개월간 동 절차의 정지를 명하여 KGM의 자산이 키르기스스탄 내 다른 회사로 이전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KGM은 파산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의 채권에 대한 신청인의 집행이 어려움을 갖게 되어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에너지헌장협정⁴³⁾상 투자보호규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판정금액은 신청인 채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판정하였다.

셋째, 중양아시아 국가들의 엄격한 외환관리와 무역절차지연의 문제이다. 중양아시아 국가들은 구소련 당시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경제스타일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복잡한 무역제도는 국제상거래와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는 외환거래로 인하여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외환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외환사정의 어려움은 달러화 환전은 그 신청이 된 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⁴⁴⁾ 뿐만 아니라 무역절차로써 무역관리제도와 무역관련

40) 아제르바이젠 국제중재법 제7조 2항.

41) 타지키스탄은 뉴욕협약에 2012년이나 체결국이 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재를 위한 법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의 체결국으로 가입하고 있지도 않다.

42) *Petrobart Limited v. Kyrgyzstan*, SSC Case No 126/2003.; 산업자원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 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2007. 1, pp. 333~334.

43) *Energy Charter Treaty(ECT)*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된 국제적 국제에너지헌장으로서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에너지산업에서 국제적 상호협력력을 위한 다국적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정식회원은 아니고 옵서버지위를 가지고 있다.

44) 산업통상자원부, “중양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 2013. 12, pp. 32~34.

법규의 미정비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무역거래비용의 증가가 상존하고 있다. 이는 상시적이며 예기치 않는 분쟁유발의 여지와 함께 그 해결의 어려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이다.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실무적 제도적 보장의 문제이다. 투자분쟁관련 제도적 보장과 그 집행력이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은 또 다른 사안이며, 자국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승인이나 집행의 지연이나 집행거부 등이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양하게 발생한다. 중재판정의 거부 사유로서 본안 전 투자분쟁합의나 적법한 의사통지, 준거법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할권의 존부를 사유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Romak S.A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사건⁴⁵⁾이 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의 곡물거래 회사인 신청인은 스위스와 우즈베키스탄간에 체결된 BIT 협정에 따른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 법원은 BIT협약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의 투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mpany(CIOC)*사건⁴⁶⁾에서도 관할권이 문제가 되었다. 본 건에서 CIOC는 2002년 5월 27일 계약으로 5년간 계약에 따른 투자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중에 2008년 카자흐스탄 정부에 의해 계약이행과 무관한 이유로 2008년 1월 30일까지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라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나 계약의무불이행이 아니라는 항변하며 다툼이 야기되었다. 본 사건은 중재관할에 관한 다툼이 다루어졌다. ICSID협약은 제25조 1항에서 체약국과 체약국과 동일한 국가의 내국회사간의 분쟁을 관할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 제25조 2항 b호에 체약국에 소재한 기업이 외국에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고 다른 체약국 국가의 회사로 취급되는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인 CIOC는 미국의 국적자가 소유지분 92%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과 체결된 BIT⁴⁷⁾에 따른 중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BIT 제6조 8항에서 요구하는 CIOC가 미국 투자라는 라는 사실의 거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 의해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중재관할이 충족되지 않기에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45) *Romak S.A(Switzerland)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UNCITRAL, PCA Case No. AA280, November 26, 2009.*

46)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mpany LLP v.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Case No. ARB/08/12*

47) 1992년 5월 19일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상호 투자촉진과 보장을 상호조약을 체결하고 1994년 1월 12일부터 발효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로서 관할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Ruby Roz* 사건⁴⁸⁾에서도 나타난다. 본 사건은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중재관할의 성립이 논란이 되었다. 즉, 투자중재를 제기하는 신청인이 외국인투자법상 주체 당사자로 인정되며 중재관할이 성립하는지가 문제였다. 신청인의 회사는 피신청국 국적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외국인이 소유하는 국내기업은 ‘외국인투자자’의 범위⁴⁹⁾에 포함되지 않음을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중재조항을 국내기업인 신청인 회사는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⁵⁰⁾

다섯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1991년 독립된 이후 짧은 기간동안 국제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국제적 수준의 국제협력과 조약체결이 미흡하다. 국제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ICSID 국제투자분쟁협약의 체결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투자분쟁해결을 구비할 것이 요구된다.⁵¹⁾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투자관련 양자간 협정의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와 1991년 이후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경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과는 1992년 이후 외교관계 수립은 이루어졌으나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 및 투자관련 협정이 미흡한 상태이다.

2.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

첫째,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비록 ISD가 내재하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국제표준의 투자분쟁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 표준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각양각색의 부적절한 사유로서 중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거부하는 경향

48) *Ruby Roz Agricol and Kassem Omar v. Kazakhstan*, UNCITRAL, Decision on Jurisdiction, August 1, 2013.

49) 카자흐스탄의 1999년 8월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기업을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50) 이외에도 *V. Belokon* 사건(*V. Belokon v. Kyrgyz Republic*, UNCITRAL Arbitration Award, October 24, 2014)에서도 보호대상 외국인투자자 지위 부정되었다.

51) 2015년 10월 현재까지 세계 151개 국가들이 체결하고 있는 ICSID협약에 대하여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키르기스스탄은 1995년 6월에 서명만 하고 있는 상태이며 체결하고 있지 않다.

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제도의 표준화된 경향이다. 이와 같은 국가투자분쟁협정에 의한 해결로서 적용된 사례로서 *Rumeli Telekom v. Kazakhstan* 사건⁵²⁾에서 중재판정의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판정의 이유가 부재하거나 중재판정의 결론에 이르는 논리상 문제가 존재하여 당사자가 판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의 내용에 비추어 중재판정의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무역과 투자를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계약서를 적극활용함으로써 국제적 통일적 규범에 입각한 무역과 투자약정의 체결과 준수도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국가에 의한 경제주도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관련하여 국제상거래상 주권면제의 포기과 중재합의시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서 단순히 중재합의만을 하였다가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재판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권면제의 포기합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상업회의소의 ICC 중재규칙을 적용하여 분쟁해결을 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국가는 중재합의만이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주권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프랑스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프랑스 최고법원은 ICC 중재규칙의 제24조에 의해 국가가 ICC 중재에 합의하는 것은 관할권 면제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 면제도 포기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⁵³⁾ 그러므로 중재에서의 관할권 면제와 집행면제를 구별하여 국가기관이 집행기관임을 고려하여 국제 통일적 표준과 무역관행에 부합하는 계약을 원용함으로써 그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다.

셋째, 국제적 투자분쟁해결 협정인 ICSID협정에 의한 분쟁해결 도모와 함께 국제기관인 ‘다자간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MIGA)에 의한 보험과 보증서비스를 활용하여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을 전가할 수 있다. MIGA는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으로서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보험 및 보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국제기관이다. MIGA를 이용할 수 있는 적격 당사자는 MIGA 회원국 소속의 정부 또는 민간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1992년 이후 가입하였으며, 이후 2002년에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이 모두 MIGA 회원국으로서 가입하였다.

52) ICSID Case No ARB/05/16, 2010.

53) 이 경우는 외국 국가의 재산이 프랑스 내에 있는 경우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pp. 53~54.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및 투자협정의 체결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및 담보제공의 능력이 부족하여 현지 인프라 개발 사업 참여의 경우 사업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프라 개발이 제한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지역경제협력체(CAREC)⁵⁴⁾가 교통, 에너지부문에서 인프라 개발사업을 활발히 주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경제 및 사회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한다.⁵⁵⁾ 특히 비경제적 관계구축을 통하여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상호보완적 동반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국가 수용으로부터의 보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유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장소나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재판의 실질적 공정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 해외투자 시에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형태의 진출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자원보유국들이 가지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나 시장의 폐쇄성 등에 따른 해외 자원개발과 신규시장개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중앙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보유자원과 지정학적 물류 전략지로 부상함에 따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유럽국가 등을 포함하여 투자시장으로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향후 전개될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간의 경제협력 및 증대가능성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의 에너지개발을 비롯하여 IT, 의료, 문화, 교육, 금융, 농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협력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산업 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는 우호적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중의

54)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아제르바이잔, 중국 등이 회원국으로서 회원국들 간의 교통, 에너지 무역증진, 무역정책 등의 협력을 주목적으로 창설되었다.

55)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과는 투자보장협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하나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제3대 투자국으로서 상호협력의 경제동반자의 지위에 있다. 1992년 이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20여 년간 꾸준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실체적으로 구축해 오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의 친밀한 관계가 깊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분쟁에 관련한 제도적으로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상거래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의 법원이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국제적 표준과 관례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재제도에 관한 법제의 미흡과 함께 관할 법원이 국제상사분쟁 관련 실체적인 규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특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국제적인 상업계에서 요구하는 현대적인 경제활동의 경험이 미흡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분쟁에 관한 분쟁해결에서는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법제적 성격과 함께 고려할 사항은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다. 경제적인 협력관계의 긴밀성을 더욱 끈고히 하도록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이 거주하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서적 문화적 유대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 및 투자자들의 우호적 협력증진을 통하여 단기적인 무역규모의 확대나 투자성과 노력보다는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고에서는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표준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법제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무역과 투자에 따른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기보다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역사와 법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된 법률적인 측면과 상거래분쟁해결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고가 중앙아시아의 각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독려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가 품고 있는 잠재성장 가능성과 상호동반 성장의 주요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투자와 무역관계에서 안정적인 법적 환경과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및 에너지 그리고 자본재의 무역과 투자에서 그 양적 규모를 늘려 비중있는 경제교류관계로 확대하면서 질적으로는 상호 보완성장하는 동반자관계를 지향함으로써 지속적인 상호 이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익준, “국제화물운송 경로선택의 결정요인 분석: CIS 지역 관세동맹으로 인한 물류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2013.
- 박지원, “중양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중양아시아 연구소, 외국어대학교, 2013. 8.
- 박해선·김승년, “터키와 중양아시아의 경제협력관계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5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5. 1.
- 법무법인 율촌,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법령해설”,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8.
- 법무부,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2014. 4.
- _____,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2010.
- 산업자원부,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 사례로 본 정부정책적 시사점, 2007. 1.
- 산업통상자원부, 중양아시아 진출기업 애로해소 가이드 북, 2013. 12.
-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 조택래,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자원개발 성격과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2011. 12.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한·우즈베키스탄 자원개발 협력방안 연구”, 정책 연구보고서, 2008. 12.
- 한국수출입은행, 중양아시아 투자환경 및 시사점, 2014. 6.
- Baker & McKenzie,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Uzbekistan”, 2010.
- EBR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sessment -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the CIS and Mongolia”, *Roman Chapaev Consultant to the Project*, 2007. 4.
- James H Carter,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Ltd, 2011.
- OECD, “Experts Group Meeting on Dispute Resolution and corporate Governance”, *UNCITRAL Secretariat*, Vienna International Centre Vienna, Austria, 2003.
- Peter Schlechtriem and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UNCTAD, “Recent Developments i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sues Note*, 2014. 4.

ABSTRACT

A Study on Arbitration for Dispute Resolutions of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the Investment in Central Asia

Byoung-Uk YU

Central Asian Countries had been independent in 1991 from USSR. Since then it have been increasing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mount with outside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EU and South Korea. Korean enterprises and entities have endeavored to secure plentiful natural resources, oil and gas energy and expand the market share to exporting the consuming and industrial competitive goods and services for those countries.

In the case of disput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 arbitration is regard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has been preferr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investments by the business world. Since the collapse of the USSR,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worked to modernize its arbitration law and procedure to conform with international standard rules. Arbitral legislation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based on the Model Law as adopted in 1985. However, CIS's legislation systems of arbitration are not satisfi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national laws and practices. That is the reason to consider for the specific parliament about arbitr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s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between Korean enterprises and CIS.

In this article, it is discuss problems and its alternatives in the dispute resolution about the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into Central Asian countries including the tendency to the increasing the trade volumes of goods and investment between South Korea and CIS.

According to this article, South Korea consider the long term strategy followed the preferred economic relative partnership for business success on commercial transaction and investment with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eywords : Central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vestment Dispute, ISD, CIS